
2018년 양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양 주 시
기 획 예 산 과

목 차

□ 2018 양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
□ 공통공시 총괄	3
1. 공통공시 총괄	3
2. 예산규모	4
2-1. 세입예산	4
2-2. 세출예산	5
2-3.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6
3-1. 재정자립도	6
3-2. 재정자주도	7
3-3. 통합재정수지	9
4. 재정운용계획	10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0
4-2. 성인지 예산현황	11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12
4-4. 성과계획서	14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5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6
5. 재정운용성과	17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17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18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19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19
□ 유사단체 분류	20

2018년 양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양주시장

- ◆ 우리 시의 '18년도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7,10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720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378억원보다 277억원이 적습니다.
 -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84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613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0억원입니다.
- ◆ 우리 시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5.3%(개편후 32.9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7.53%(개편후 65.2%)입니다.
- ◆ 우리 시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40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단체 평균보다 재정규모는 적으나, 예산규모대비 자체재원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이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건전재정이며, 지속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조금심의, 투자심사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이정연(031-8082-5073)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양주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7,101	6,381	720	7,378	6,499	878
	세출예산	7,101	6,381	720	7,378	6,499	878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개편전)	35.3	38.09	△2.79	30.81	31.43	△0.6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개편전)	67.53	71.01	△3.48	67.12	67.5	△0.38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40	128	12	39	12	27
재정운영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3) (2017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16년 인구규모, 최근5년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 또는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

※ 붙임1-유사단체 분류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10,131	558,426	105,279	34,849	11,57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97,853	488,945	585,827	638,091	710,13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2,057	100.00	408,682	100.00	467,907	100.00	486,575	100.00	558,426	100.00
지방세	107,769	26.80	108,245	26.49	115,041	24.59	126,490	26.00	143,194	25.64
세외수입	16,403	4.08	17,119	4.19	43,157	9.22	34,814	7.15	40,899	7.32
지방교부세	101,000	25.12	94,500	23.12	111,500	23.83	121,016	24.87	125,491	22.47
조정교부금 등	23,394	5.82	33,313	8.15	33,917	7.25	39,209	8.06	54,501	9.76
보조금	141,991	35.32	140,005	34.26	140,292	29.98	141,036	28.99	181,322	32.47
지방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500	2.86	15,500	3.79	24,000	5.13	24,010	4.93	13,019	2.3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우리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10,131	558,426	105,279	34,849	11,57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97,853	488,945	585,827	638,091	710,13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2,057	100.00	408,682	100.00	467,907	100.00	486,575	100.00	558,426	100.00
일반공공행정	29,673	7.38	40,815	9.99	46,274	9.89	43,380	8.92	37,148	6.65
공공질서 및 안전	6,199	1.54	4,670	1.14	2,270	0.49	2,626	0.54	2,950	0.53
교육	7,876	1.96	8,347	2.04	8,583	1.83	11,104	2.28	11,878	2.13
문화 및 관광	19,760	4.91	20,716	5.07	20,313	4.34	29,507	6.06	25,140	4.50
환경보호	39,073	9.72	41,743	10.21	42,749	9.14	28,028	5.76	28,596	5.12
사회복지	132,254	32.89	126,515	30.96	145,019	30.99	153,716	31.59	189,929	34.01
보건	5,253	1.31	6,892	1.69	7,693	1.64	8,689	1.79	10,226	1.83
농림해양수산	23,097	5.74	23,978	5.87	38,363	8.20	23,325	4.79	30,356	5.44
산업·중소기업	2,069	0.51	3,561	0.87	4,060	0.87	7,292	1.50	11,363	2.03
수송 및 교통	53,916	13.41	46,745	11.44	57,979	12.39	49,248	10.12	66,587	11.92
국토 및 지역개발	17,967	4.47	22,624	5.54	26,069	5.57	38,026	7.81	56,728	10.1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8,497	2.11	5,015	1.23	5,590	1.19	8,431	1.73	10,745	1.92
기타	56,421	14.03	57,060	13.96	62,945	13.45	83,204	17.10	76,780	13.7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649,404	719,859	70,455	0.11
우리시	638,091	710,131	72,040	0.11
공사·공단	10,313	8,728	-1,585	-0.15
출자·출연기관	1,000	1,000	0	0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사·공단(1개) : 양주시시설관리공단
- ▶ 출자출연기관(1개) : 양주시희망장학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개편전 기준 35.30%(개편후 32.9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5.30 (32.97)	558,426 (558,426)	197,112 (184,093)	361,314 (361,314)	0	0 (13,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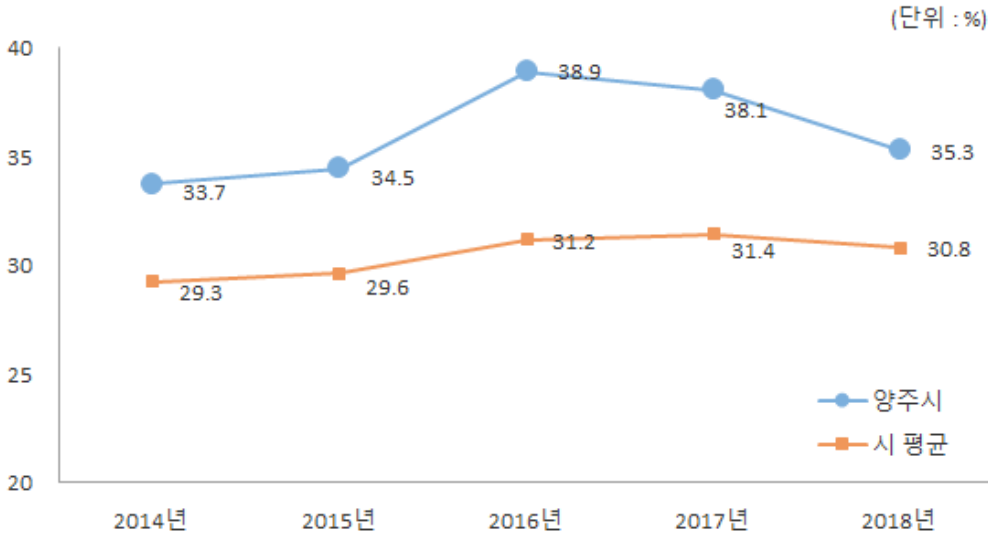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개편후)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33.74 (30.88)	34.47 (30.68)	38.94 (33.81)	38.09 (33.15)	35.30 (32.9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는 유사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고 2016년도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2017년도에는 U-city사업 추진을 위한 LH협약금 100억 원 부담으로 일시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2018년도에도 양주신도시 신규입주에 따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소득세 증가 추세와 더불어 체납징수율 향상 등으로 자체수입 연도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짐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개편전 기준 67.53% (개편후 65.2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7.53 (65.20)	558,426 (558,426)	377,104 (364,085)	181,322 (181,322)	0	0 (13,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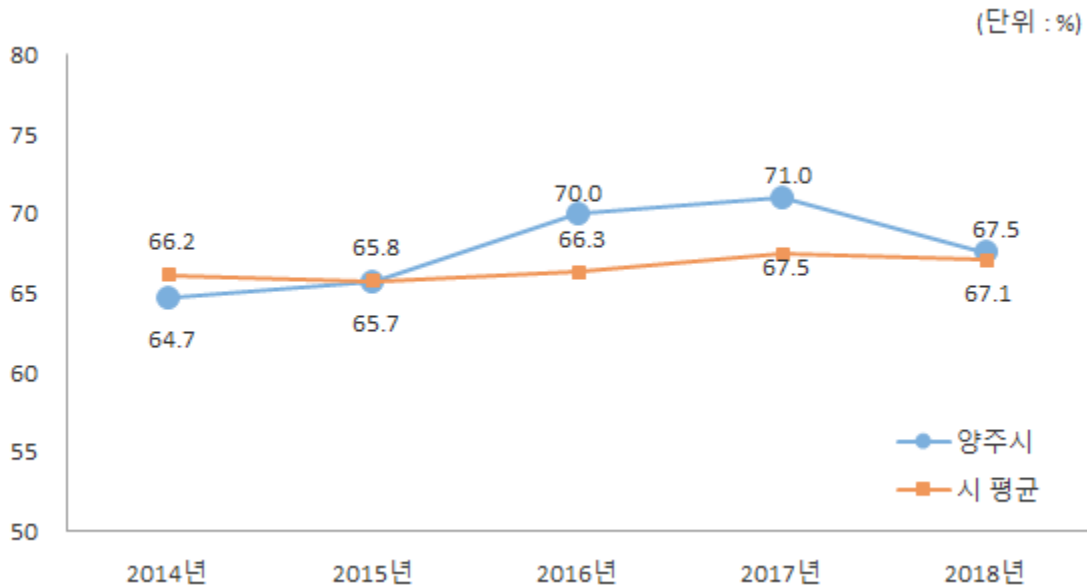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제외수입에서 제외된 값(개편후)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4.68 (61.82)	65.74 (61.95)	70.02 (64.89)	71.01 (66.08)	67.53 (65.2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의 증가와 함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으로 연도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2017년 대비 2018년 자주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이전재원인 국도비가 2018년 본예산의 32%으로 전년대비 4%상승하였으며, 이는 전액 도비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이 최근 2년간 본예산에 지원되지 않았지만, 2018년 본예산에 118억 원 편성하였고, 일자리 관련 예산과 복지 분야 예산의 전반적인 증가세로 210억 원 증가 한 것이 요인으로 판단됨.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우리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24,871	653,898	538	520	-18	43,016	653,880	-29,009	14,007
일반회계	545,420	526,085	7	0	-7	13,000	526,078	19,341	32,341
기타 특별회계	5,886	21,267	532	520	-12	20,906	21,255	-15,369	5,537
공기업 특별회계	73,094	105,204	0	0	0	9,110	105,204	-32,110	-23,000
기금	471	1,342	0	0	0	0	1,342	-871	-871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20,479	-24,053	-31,077	-45,153	-29,009
통합재정수지 2	504	815	11,131	12,791	14,007

☞ 통합재정 산출에 있어서 회계간 거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회계간 거래 즉 정부의 금융활동으로 간주되는 보전재원은 제외처리함. 이에 통합재정수지 1에서 우리 시의 적자 수치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데, 이는 특별회계의 세입이 대부분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며, 이에 통합재정수지 2에서는 순세계잉여금 430억원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140억 흑자재정을 유지.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96,842	889,059	854,964	857,805	863,694	4,262,364	2.00%
자 체 수 입	216,743	228,683	234,790	246,832	256,094	1,183,142	4.30%
이 전 수 입	447,253	512,416	488,728	485,852	489,191	2,423,440	2.3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2,846	147,960	131,447	125,121	118,410	655,784	-2.80%
세 출	796,842	889,059	854,964	857,805	863,694	4,262,364	2.00%
경 상 지 출	162,101	178,846	177,821	169,950	167,105	855,823	0.80%
사 업 수 요	634,741	710,214	677,143	687,855	696,589	3,406,542	2.4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0	24,21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	3,28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9	20,50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434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18 성인지 예산서](#))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 우리시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보고서에 관련된 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취업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 우리시 69건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사업입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 우리시 총 3건으로 세일센터 지정운영(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해당됩니다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모델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98,554	- (의견 제시 17건)*	모델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원 기타 부칙	제11조(시행규칙) 부칙	제15조(시행규칙) 부칙	제24조(시행규칙) 부칙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의견제시
미디어정보담당관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	0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위한 무료 설치 방안 ⇒ 정보에 소외된 시민에게 무료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공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활동지원사업	0 자유총연맹 활성화 사업 전년예산 대비 증액 이유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증액이며 2017년 사업실적이 우수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 일부를 증액
기획예산과	인구정책추진사업	0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 행사운영비인 저출산 대책교육비 편성 내역 ⇒ 인구정책 행사로 저출산대책 교육행사(2회) 관련 행사운영비
복지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	0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개선 방안 ⇒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여성보육과	여성친화도시조성 공무사업추진사업	0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추진 관련 사업 내용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안전환경분야, 돌봄분야, 일자리분야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이 있음.
체육청소년과	시민(읍·면·동)체육대회 추진사업	0 시민(읍·면·동)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매해 행사 때마다 시민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예산액을 감액 ⇒ 양주시의 체육활성화와 양주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읍면동별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문화관광과	감동파크갤러리조성사업	0 양주시 대장금파크 활성화 방안 ⇒ 대장금테마파크는 소유주(MBC) 사정상 휴업 중이나, 민간업체가 MBC와의 MOU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여 관광객 유치를 계획 중
일자리경제과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0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확대방안 ⇒ 베란다(미니)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20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난 8월 수요조사 실시 후 예산을 요구
교통과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	0 공영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사업자 관리감도 철저 ⇒ 최대한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미운행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사업추진	0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을 요청 ⇒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 예산을 편성 함.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사업	0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양공동주택의 임대공동주택 입차인대표회의 운영교육 확대를 시행 ⇒ 임대주택 입차인대표회의 구성원도 운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도로과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	0 도로관련 예산은 단순히 유지보수 예산보다는 좀 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 필요 ⇒ 도로유지보수는 수시 발생하는 사항으로,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정하게 추진
농촌관광과	체험관광농원조성 및 운영사업	0 천일홍 축제시 음식문화 향상 방안 ⇒ 주차장 및 화장실 확대 및 쾌적한 환경조성 제도 마련
농업정책과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	0 농가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업을 적극 발굴 ⇒ 농가 경쟁력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해 시범사업, 보조사업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교육 및 이통장 회의 등 소통의 창을 통한 농업인의 의견 수렴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배출 개선사업	0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쓰레기 수거관리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편성 ⇒ 양주시는 현재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승강장 위주로 25개의 공공용 쓰레기통을 설치·운영중이며, 주변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 스마트 쓰레기 수거시스템이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타 지자체 운영결과 및 설치에 따른 장점이 클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범 설치 등을 검토하겠음.
보건행정과	정신건강증진사업	0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예산을 좀 더 증액 ⇒ 현재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 퇴원·퇴소자 증가에 대비하여 2017년 하반기 중증정신질환관리인력 2명을 추가 채용하였음. 2018년에도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양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교육진흥원	도서관관리2팀 환경개선사업	0 희망도서관 환경개선 요청 ⇒ 공기청정기 비치 등 지속적인 환경개선 추진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12	111	279	255	593,275	522,064	71,211
미디어정보담당관	1	7	12	9	8,853	7,165	1,688
감사담당관	1	1	6	1	111	115	-4
기획행정실	1	21	43	43	106,963	98,192	8,771
복지문화국	1	19	42	54	215,780	183,307	32,473
경제교통국	1	13	43	34	46,827	45,040	1,786
도시주택국	1	20	41	31	48,299	42,596	5,703
도시성장전략국	1	7	12	13	35,756	27,572	8,184
보건소	1	2	23	16	9,629	8,407	1,222
농업기술센터	1	6	19	22	27,293	21,460	5,833
도시환경사업소	1	11	23	22	71,672	65,482	6,190
교육진흥원	1	3	10	8	14,904	14,342	562
의회사무과	1	1	5	2	1,107	1,384	-277
읍면동사무소	0	0	0	0	6,080	7,002	-921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18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

- 작성부서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제외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성과관리 대상 : 정책사업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 예산집행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도출 유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5.30 (32.97)	67.53 (65.20)	34.01	32.41	46.7	33.56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개편후)입니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재정운용상황개요서](#))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36	80	-
	부단체장		5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13	513	-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37	55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6	
	의원국외여비		36	
지방보조금		10,825	10,739	-8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통장 - 기본수당:200천원/월 - 연 상여금 200% - 회의 참석수당:20천원 ○반장수당 : 연50천원	좌동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90천원/인	좌동	-
공무원 일·숙직비		50천원/인	좌동	-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이 관리되고 있어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됨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5결산내역 반영)	2018년 (2016결산내역 반영)
계	154	4,973
인건비 절감	159	182
지방의회경비 절감	19	5
업무추진비 절감	245	19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34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170	2,627
지방청사 관리·운영	901	2,304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 표6에 따라 산정
- ▶ (+) : 인센티브, (-) : 페널티
- ☞ 자체노력도는 2018년도 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세출 효율화)가 늘어난 주요사유로,
 - 행사축제성경비 절감은 2018년(2016년 총예산액 대비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이 0.5913으로 2017년(2015년 결산 비율 0.5359)과 비교하여 볼 때 비율이 늘어나 (-)로 작용되었으나, 2015년도에 메르스로 주요행사가 취소된 상황을 볼 때 익년도에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보조금 절감은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운영원칙 준수로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2016년 양주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주변정리사업(35억) 등 대규모 지출의 진행이 완료되어 보조금 비율 감소에 기여하였음.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4,157	4,729
지방세 징수율 제고	-1,146	-2,199
지방세 체납액 축소	-8,386	6,811
경상세외수입 확충	1,976	-2,57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2,516	2,644
탄력세율 적용	-755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48	47

-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 인센티브, (+) : 페널티
- ☞ 자체노력도는 2018년도 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세입 확충)이 늘어난 주요사유로,
 - 옥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세외수입이 늘어났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부도, 체납액이 증가함. 이에 체납자의 재산 추적 등 강제징수이행 수단과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를 통해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7년에 우리 우리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2018년도 교부세에 반영)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건)		890백만원
법령위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사후관리업무 부당	889백만원
수입징수 태만	중과세 미적용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누락	1백만원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7년에 우리 우리시가 주요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2018년도 교부세 반영)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붙임1

유사단체 분류 (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15개 단체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전북 전주시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포항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시-(2) 21개 단체	경기 평택시 경기 김포시 충북 충주시 전남 순천시 경남 양산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경북 경주시	경기 시흥시 경기 안성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시 전북 익산시 경남 진주시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전남 여주시 경남 거제시	
	시-(3) 19개 단체	경기 군포시 경기 포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목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충남 보령시 경북 김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경북 안동시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 충남 논산시 경북 경산시	경기 구리시 강원 삼척시 충남 당진시	
	시-(4) 20개 단체	경기 의왕시 강원 속초시 전북 김제시 경북 상주시	경기 동두천시 충남 공주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	경기 과천시 충남 계룡시 전남 광양시 경남 통영시	강원 동해시 전북 정읍시 경북 영주시 경남 사천시	강원 태백시 전북 남원시 경북 영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경기 양평군 충남 예산군 전남 장흥군 경남 거창군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 전남 해남군	인천 강화군 충북 음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무안군	인천 옹진군 충남 부여군 전북 부안군 경북 칠곡군	울산 울주군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함안군	
	군-(2) 20개 단체	경기 가평군 충북 진천군 전남 담양군 경북 의성군	경기 연천군 충북 괴산군 전남 화순군 경북 울진군	강원 평창군 충남 금산군 전남 영암군 경남 창녕군	강원 정선군 충남 서천군 전남 완도군 경남 고성군	충북 영동군 충남 태안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합천군	
	군-(3) 20개 단체	강원 횡성군 강원 고성군 전북 임실군 경북 청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양양군 전북 순창군 경북 성주군	강원 철원군 충북 보은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예천군	강원 양구군 충북 옥천군 전남 영광군 경남 하동군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 전남 장성군 경남 함양군	
	군-(4) 21개 단체	강원 화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진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산청군	충북 단양군 전남 곡성군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충남 청양군 전남 구례군 경북 청송군 경북 울릉군	전북 진안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양군 경남 의령군	전북 무주군 전남 함평군 경북 영덕군 경남 남해군	
자치구	구-(1) 13개 단체	서울 중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북구 서울 양천구 서울 송파구	서울 도봉구 서울 강서구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서울 구로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초구	
	구-(2) 12개 단체	서울 종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관악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동구 서울 금천구	서울 광진구 서울 영등포구	
	구-(3) 22개 단체	부산 진구 부산 사상구 인천 중구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동구 인천 남구 광주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대구 북구 인천 연수구 광주 북구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서구	
	구-(4) 22개 단체	부산 중구 부산 남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동구	부산 서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울산 북구	부산 동구 부산 연제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부산 영도구 부산 수영구 인천 계양구 대전 대덕구	부산 동래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울산 중구	

※ 2017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16년 인구규모, 최근5년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시·군) 또는 재정자립도(자치구),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